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1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박기열, 채인묵, 김희걸,
한기영, 오중석, 노식래, 오현정,
박기재, 이호대, 강동길, 최정순,
송정빈, 김제리, 김광수, 유 용,
문병훈, 김기덕, 이광성 의원 (19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업의 내용과 상위법인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사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일적으로 조정함. (안 제4조제1호의 개정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
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 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 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 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 <u>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·관리하 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